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2. 3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9. 2. 10
- 다. 상정일자 : '99. 2. 10(제7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 나.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98. 7. 16)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외국인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고용촉진 유도

- 다. 주요 내용

- 용어수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 부동산 시가표준액

- 건축물이 적법한 경우에만 대부료 및 사용요율 1000분의 25 적용(안 제23조 제6항)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 규정에 의기 준공인기를 릴한 건물에 한함)

-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협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매각은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연 4%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함.
(안 제22조 제4항)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는 투자금액에 따라 50% ~ 전액감면
(안 제23조의 3)

- 대부료 납기 및 공유재산 관련 각종 미납금에 대한 연체율 적용

- 납기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선납(농경지 경작의 경우로서 1년이상 대부는 농지수입금 확정후 60일 이내 납기) (안 제26조)

- 연체율 : 대부료 · 사용료 · 매각대 · 교환차액 · 변상금의 납기내 미납시에는 연 15% 연체율 적용 (안 제28조)
- 수의계약 매각범위 확대 (안 제39조의 2)
 -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실경작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하 (신설)
 - 폐천부지의 경우 읍면지역의 매각은 6,600제곱미터 이하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98. 7. 16) 내용과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등의 기준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 세계화 · 지방화 시대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국제관계의 조류를 수용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라 생각됨.
- 아울러 입법 예고절차와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와 저촉되는 사항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

- 제39조의 2 (수의계약매각범위등)의 규정에 신설하고 있는
 -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하」 와,
 - 「폐천부지의 경우 읍면지역의 매각은 6,600제곱미터 이하」 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과대하게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

고,

- 종전의 조문내용과 같이 존치하기로 수정의결

첨 부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종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복

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2항중 "토지과세시 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끝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복 내지 미복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복 내지 마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복내지 라복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복내지 라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충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사, 사정정동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다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x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균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분의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의 조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3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매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누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 영 96조의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실과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 관사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와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문부터 적용한다.
-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 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문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생략) 1. 보상금액은 <u>부동산과세시가표준</u> 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 까지는 1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생략) ②(생략)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 1. - - - - - 부동산시가표준 액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 관리관은 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신설>	<p>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 한 잡종 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의 계약 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 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 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 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 금의 주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 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94. 7. 21 조1348>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주택개발재개발시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 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 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 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기 확실시되어 계 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 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 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 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천재·자연·기타 재해 또는 매 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 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 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와 같다.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 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 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 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1.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 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에 필요한 토지하는 경우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이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 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 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 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p> <p>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나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생 략)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서련한 금액으로 한다. ③~⑤(생략)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 ② - 토지 시 가표준액 - - - - - - - - - - ③~⑤(현행과 같음)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지사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⑦<삭제>
<신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신설>	<p>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신설>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정 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누법"이라 한다)</p> <p>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는 제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 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 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 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 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 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 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매치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가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이상 2천만달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시약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기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지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갑면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이상 1천만달리 미만으로 제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 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 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 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기존 누사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 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 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식채취료 등) ①~③(생략)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제24조(토식채취료 등) ①~③(생략) ④-----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기 정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태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 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 물 평가액과 부지 (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 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 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지면적의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비단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 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25조 (건물 대부료 신출기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 사용사기 전용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 로 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 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	
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공용으로 사 용하는 사람들 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제26조 (대부료의 납기) ①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낸도분을 다음에 기 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 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 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 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략) ②~③ <삭제'95. 11. 15. 조1385>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 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 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 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생략)</p> <p><신설></p>	<p>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u> - - - - - - -</p> <p>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 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 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 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 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 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 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 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상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 인원이 1천명이 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지 여내의 재산</p>
	<p>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 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 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성
	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 원이 500명 이상인 1천명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 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 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u>용지내의 재산</u>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 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 내의 재산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u>실과장등</u>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 유하는 공용주택과 동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 을 말한다.	제50조 (정의) - - - - - - - - - - 시설관리사등 -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 분에 의한다.	제51조 (관사의 구분)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관사등
제5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 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장가액의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 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p>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